



중앙 화공기 기계 설계 도면 및 고객명단 유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사건

48

01 서지 사항

| | | | |
|------------------|---------------------------------|-------|---------------------|
| 국가 법원 |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 | 사건번호 | 평성21년(네) 제10001호 |
| 판결 일자 | 2009. 3. 31. | 판결 결과 | 항소 기각 |
| 원고 (항소인) | 중앙 화공기 상사 주식회사 | | |
| 피고 (피항소인) | 1. MM테크 주식회사 2. X, 3. X1, 4. X2 | | |
| 참조 법령 | | | |
| 영업 비밀 | 기계설계도면(복제도면), 경력부, 고객명단 | | |
| 키워드 (Keyword) | 경업, 도면유출, 고객정보 유출 | | |

02 사건 개요

일심원고인 항소인은 중앙화공기주식회사의 판매회사로 일반화학기기, 전기기기 등의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다. 일심피고(피항소인) X, 동 X1, 동 X2가 항소인회사의 이사 재임 중에 퇴직 후 경업을 도모하여 기계에 관한 장부인 경력부, 고객명단, 기계설계도면(복제도면) 등을 반출하였고, 퇴임 후에 피항소인인 MM테크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이사로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 자유경쟁 범위 이탈 위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청한 사안이다.

원심의 도쿄지방법원은 피항소인들의 상기 위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항소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항소인)



피 고 (피항소인)

"상기 기계설계도면(갑1 내지 36)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 X들이 원고 밑에서 기계설계도면을 반출했다는 사실을 즉시 추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는 원판결은 잘못이다.

피항소인들이 작성한 도면에서도 항소인 작성 도면을 복제한 것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 있다.

갑8, 10, 24호증의 도면은 피고 X 또는 피고 X1의 수중에 있던 것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 뒷받침이 빠져 있지만, 피고 X 및 피고 X1의 원고에서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즉시 불합리하다고 까지는 말할 수 없다 ..."는 원판결은 잘못이다.

도면검사를 집에서 하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없다. 조립도에서 추측 한 데이터에서 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작성 속도이다.

원판결은 피항소인 X들이 항소인으로부터 기계설계도면 등의 자료 반출을 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전제가 잘못임이 분명하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항소인의 손해액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항소인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첫째, 제일심에서 항소인이 주장한 내용 이상의 것은 아니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것도 아니다. 피항소인들은 원판결을 전면적으로 적정하고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원판결의 판단 취지를 모두 원용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정의된 "영업 비밀"의 반출이라고 하면, 비공지성의 요건, 사업 활동 상의 유용성의 요건, 기업 내부의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검토되어야만 한다.

항소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04 판결 요지

당 법원도 항소인의 피항소인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피항소인 X들의 수중에 있던 기계설계도면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도 피항소인 X들이 항소인회사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반드시 불합리라고는 할 수 없고, 고객업체에서 조립도를 입수하여 기계를 분해하고 치수를 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항소인 주장의 피항소인 X들이 기계설계도면을 반출한 사실에 대해, 본건 전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모든 기계에 대한 도면을 만드는 것도, 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아니기에, 무엇이 없어졌는지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하며, C의 상기 증언에서 피항소인 X들에 의한 반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퇴직자가 자신의 퇴직이 어쩔 수 없음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경업준비를 위한 기계설계도면을 반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 있다.

05 Key Point

중요한 설계도면이 번호가 부여되는 등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면 반출되었음을 주장하기 어렵다.

일본 판례에서는 퇴직자에 대한 관리는 중요하지만, 정황만을 가지고는 영업비밀 등 중요정보가 반출되었거나 경업 행위를 준비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